

다중범죄피해의 실태와 영향요인

노 성 호*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08년도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다중범죄피해의 3가지 측면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다중범죄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다중범죄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집단별로 살펴보고, 셋째, 다중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다중범죄피해란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해서 범죄피해를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지난 1년동안 2번이상의 다중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166명으로 전체의 1.6%에 해당한다. 전체 피해사건 중에서 다중범죄피해자가 경험한 사건은 약 30% 정도였다. 다중피해집단을 가구중복집단, 대인중복집단, 가구대인중복집단으로 구분하여 개인적, 환경적 측면에서 각 집단의 특성이 구분되는지 분석한 결과 각 집단은 개인적 특성과 배경적 요인에 있어서 구분되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다중범죄피해를 일으키는 요인을 찾기 위해 세 집단(피해없는 집단, 1회피해집단, 다중피해집단)에 대해서 명목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해없음과 1회피해집단을 구분하는 요인과 1회피해집단을 구분하는 요인과 다중피해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즉 다중피해의 과정이 단일피해의 과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주제어 : 다중범죄피해, 범죄피해 원인, 범죄피해조사

I. 들어가는 말

범죄학연구나 형사사법분야에서 범죄자에게 치우쳐 있던 연구의 관심이 점차 범죄피해자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범죄피해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 전주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범죄피해자에 대한 많은 조사와 연구결과들이 산출되고 있지만 개인이 당하는 반복적인 범죄피해는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많이 연구되지 않은 영역이다. 이러한 관심의 부족은 다중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위해서 매우 큰 표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범죄피해조사결과를 보면 범죄피해를 당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드문 현상이며, 2번 이상 피해를 당하는 것은 더욱 희귀한 현상이라는 인상을 준다. Sparks(1981)는 일반 모집단의 대표표본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다중피해의 충분한 사례를 확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며 이러한 현상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에 실시된 범죄피해조사 이전의 범죄피해조사는 표본수가 작아서 2번 이상 범죄피해를 당한 다중범죄피해에 대해 연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범죄의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인과적 요인을 찾는 것은 적절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생활양식이론이나 일상활동이론 등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만 일반적으로 범죄피해를 당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비해서 우연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범죄피해에 있어 개인의 특성 요인과 우연적인 요인의 영향은 범죄피해의 횟수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한번 범죄피해를 당하는 데는 개인적 특성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연적인 요인의 영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2번 이상 반복해서 피해를 당하는 다중피해의 경우는 우연적인 요소라기보다는 특성의 요인들이 작용해서 빚어지는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높아진다. Sparks(1981)는 반복피해의 연구는 범죄피해간의 일반적인 인과과정을 명료하게 하고 피해자 자신의 행동 속성이 그들의 피해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의 이론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중피해의 이해는 이론적인 중요성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중요성도 가진다. 이러한 이해가 범죄예방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지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Barr와 Pease(1990)과 Farrell(1992)에 따르면 과거의 피해가 미래의 위협의 강한 예측요인이 된다면 범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자

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범죄예방자원은 가장 최근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향해져야 한다. 그렇지만 더욱 구체적인 대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다중피해가 가지는 더 구체적인 인과적 과정의 파악이 필요하다. 즉 과거의 피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후 피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파악할 때 그에 적절한 전략이 수립될 수 있다¹⁾.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08년도 범죄피해 조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다중범죄피해의 3가지 측면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다중범죄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다중범죄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집단별로 살펴보고, 셋째, 다중범죄피해를 당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중범죄피해의 개념규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넓은 의미로는 일정기간동안 반복해서 복수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횡단적인 측면과 종단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횡단적인 측면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일정기간동안 2건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한 것을 의미하며, 이를 다중범죄피해(multiple victimization)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종단적인 측면에서는 이전 조사에서 피해를 경험하고 다음 조사에서도 다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반복 피해(repeated victimization)의 개념으로 사용한다(Menard and Huizinga, 2001 등). 이는 다중피해의 개념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자료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횡단적인 의미에서의 다중범죄피해의 개념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2008년도 조사에서 2회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를 다중피해로 규정한다.

1) 예를 들어 일부 피해자가 지역의 범죄자들에게 취약하거나 매력적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는 일부 피해자가 과거의 경험에 대한 보복행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과거의 피해가 미래의 위험이 높일 수 있다. 두 경우에 미래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른 전략이 요구될 것이다. 반대로 피해위험이 개인의 추정되지 않는 특성(예, 위험감수 성향)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대안적인 범죄예방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II. 다중범죄피해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

다중범죄피해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과들은 그리 많지 않으며, 연구의 내용과 관심에 따라서 몇 개 영역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다중범죄피해의 실태를 살펴보고, 다중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이다. 가장 단순한 전략은 횡단적인 피해조사의 사건발생자료를 통해서 특정 기간 동안 한건이나 그 이상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범죄조사(British Crime Survey)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Gottfredson(1984)은 성인 중에서 14%가 자기보고 범죄피해 중에서 70% 정도를 경험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피해분포가 다양한 상황이나 범죄유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연구는 주로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소수의 청소년들이 많은 수의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이 청소년 범죄피해의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특정 유형의 폭력은 다중발생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유사한 맥락에서 Menard와 Huizinga(2001)는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피해가 일반화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피해의 유형을 피해없음, 단일피해, 다중피해, 만성피해, 만성적 다중피해로 구분하였는데, 각 유형의 비율이 12.9%, 13%, 9.8%, 12.1%, 52.2%이다. 그밖에 다양한 연구들이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것이 Finkelhor와 동료들(2005)의 조사결과 등이다.

두 번째는 종단적인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과거의 범죄피해가 이후의 범죄피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이다. Reiss(1980)는 전미범죄조사(National Crime Survey) 자료를 사용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과 가구범죄피해를 살펴보는 범죄경력 연구를 발전시켰다. Reiss는 상당히 많은 반복피해가 모든 주요범죄유형에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범죄피해가 일상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절도, 폭행, 침입절도 등) 한 시점에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같은 범죄유형의 피해를 다시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범죄피해가 반복되는 현상의 피해자학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

이 제시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반복피해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두 개의 이론적 관점이 존재한다(Winkel, et al. 2003). 하나는 회복/접종(resilience/ inoculation) 관점으로서 이전의 피해경험이 미래의 피해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대처전략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피해에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한다고 본다. 이 관점에 따르면 한번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다른 하나는 취약성(vulnerability) 관점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한다.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생애사건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이후의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두 관점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으며 이를 대응일관성 모델(coping consistency model)이라 부른다. 과거의 대응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반복피해가 가져오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본다. 즉 과거의 대응성공이 미래의 대응성공의 좋은 예측인이 된다. 과거 피해에 의한 스트레스 잔여물이 남아 있는 정도와 피해간의 시간적 간격이 결과를 결정한다.

과거 피해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범죄경력 연구의 핵심이 되는 상황의존론과 모집단이질론과도 연결된다(Tseloni and Pease, 2004). 일반적으로 과거의 피해가 미래의 피해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보는데, 이러한 설명은 범죄경력을 설명하는 이론적 논의와 논리적 구조가 동일하다. 사건의존(event dependence)은 최초의 피해가 이후의 피해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함축한다. 첫 번째 범죄의 성공적인 수행은 피해자를 더 취약하고 매력적인 대상으로 만든다. 따라서 피해경험이 많고 오래될수록 계속되는 범죄로 고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이질성(heterogeneity)의 측면에서 개인이나 가구는 이전의 피해경험에 관계없이 피해를 당할 일정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일부 대상자는 그들이 다른 잠재적 대상자보다 가해자들에게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한다. 이처럼 여러 학자들이 과거의 범죄피해경험이 이후에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는 개인의 특성이 계속해서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높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연구결과는 사건종속과 이질성 모두가 현재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보여준다(Lauritsen and Quinet, 1995; Osborn and

Tseloni, 1998; Witterbrood and Nieuwbeerta, 1999). 이러한 결과에 덧붙여 Tseloni와 Pease(2004)는 짧은 기간 내에 발생한 재피해는 과거 피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중간이나 장기적인 피해는 개인적, 가구요인, 생활양식 특성과 연관되는 경향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전략과도 맞물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중피해를 연구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반복적으로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두 번째 관점을 선호하는 경우 범죄예방을 위한 대부분의 노력은 첫 번째 피해를 당하기 전에 잠재적 피해자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반면 첫 번째 관점의 경우에 반복피해의 방지는 첫 번째 피해이전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 되어야 하며, 과거 피해가 또 다른 피해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파악하여 개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²⁾.

세 번째는 복수유형피해(poly-victimization)가 가지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연구이다. 복수유형피해란 개인이 서로 다른 유형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어떤 유형의 피해를 당한 것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피해를 당한 범죄유형의 수에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복수유형피해를 종속변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변인으로 보며, 복수유형피해가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진다. 주로 아동의 범죄피해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기존에는 아동이 당하는 주요 범죄피해유형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범죄피해가 아동에게 미치는 심리적, 정신적 영향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복수유형피해연구는 피해유형의 중복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유형의 범죄피해를 중복적으로 당하는 경우에 그것이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Finkelhor, et al. 2005; Richmond, et al. 2009; Turner, et al. 2010). 전체적인 조사결과는 복수의 범죄피해를 당하는 아동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Turner와 동료들(2010)의 연구는 표본 중에서 약 66%가 2개 유형 이상의 피해에 노출되어있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Finkelhor와 동료들(2005)은 아동이 어떤 유형의 피해를 당하는가보다는 피해를 당하는 유형의 중복빈도가 아동의

2) 과거피해가 이후의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종단적인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본 연구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료만으로는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스트레스증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복수유형 범죄 피해는 기존에 단일 범주의 범죄피해가 설명한다고 간주되었던 심리적 고통 변량의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 검증되고 있다.

Ⅲ. 연구 자료 및 분석방법

1. 연구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제6차 범죄피해조사를 시행하면서 기존 피해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기존 피해조사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³⁾. 조사방법상의 특이점은 응답자들의 범죄피해를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여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NCVS 방식으로 스크리닝 질문을 강화하고, 발생한 피해의 행위(내용)를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사후에 범죄수업과 피해양상을 종합하여 사건의 범죄유형을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총조사표본수는 4710가구의 10671명이며, 2009년 9월 14일부터 10일간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2.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종속변인은 응답자들이 경험한 범죄피해변인이다. 피해범죄유형과 더불어 피해빈도가 주요한 변인을 구성한다. 조사자료에서 범죄피해는 가구대상범죄와 개인대상범죄로 구분되는데, 가구대상범죄는 4710가구가 기본이 되며, 개인대상 범죄는 10671명의 개인이 기본이 된다. 가구범죄에는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손괴, 단순손괴, 단순주거침입, 기타 가구범죄가 포함되고, 대인범죄에는 사기, 절도, 성폭력, 강도, 폭행·상해, 협박·괴롭힘, 기타 폭력범죄가 포함된다. 다중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별범죄항목별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

3) 자세한 조사방법과 결과는 김은경 등,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참고하시오.

여, 가구범죄피해와 대인범죄피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범죄피해조사는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로 구성되어 있다. 본 피해조사자료에서 범죄유형별 피해율은 사건조사표에서 피해자가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구성한 범죄피해의 유형별로 계산할 수 있다.

다중범죄피해에 대해서 분석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범죄피해조사는 대인범죄와 가구범죄를 구분하여 조사하며, 대인범죄의 경우는 다중범죄피해의 분석단위가 개인이지만 가구범죄의 경우는 가구가 분석단위가 되기에 분석단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다중범죄피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 피해경험의 빈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구범죄와 대인범죄의 다중피해를 따로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가구범죄피해를 개인단위로 전환하여 대인범죄와 함께 고려하여 다중피해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즉 가구의 대표가 피해를 응답한 경우에 가구의 구성원 모두가 같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데이터를 수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독립변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경변인은 성별, 최종학력, 본인 및 가구의 수입, 주거형태(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거주기간, 이사빈도, 가족구성형태, 직업, 혼인상태, 교통수단 등의 변인을 사용하였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었다. 먼저 일반적으로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다. “밤에 혼자 집에 있기가 두렵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느끼는 범죄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인지로서 “나도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의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지는 “최근 우리나라의 범죄양상이 점차 흉악해지는 것 같다” 등 2문항으로,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척도로서 “평소 되도록 현금을 많이 가가지도 다니지 않으려 한다” 등 3문항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범죄유형별 두려움으로서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9가지의 범죄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생활양식변인은 두 변인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개인에 관련된 것으로 늦게 귀가하는 빈도인데, 직장이나 학교일로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서 늦게(대략 저녁

10시 이후)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물었다. 거의 매일부터 전혀 없음으로 선택지를 제공하였다. 다른 하나는 가구에 관련된 것으로 집이 비어 있는 시간이며, 당신과 가족이 전부 외출하거나 출근하여 집이 비어 있는 시간이 하루 단위로 대략 몇 시간 정도인지 질문하고 거의 비우지 않음부터 12시간이상의 선택지를 제공하였다.

물리적 취약성은 살고 있는 동네의 물리적, 환경적 낙후의 정도로서 “주변에 내 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더미가 널려 있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취약성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기초질서(가령 무단횡단, 불법주정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은 경찰에 대한 신뢰도, 경찰활동능력에 대한 인식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경찰활동에 협조적이며, 경찰을 신뢰한다” 등 4문항이다.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다중피해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차분석과 평균차이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중피해집단은 피해가 없는 집단, 1번만 피해를 당한 집단, 가구피해만 중복으로 당한 집단, 대인피해만 중복으로 당한 집단, 가구피해와 대인피해를 중복으로 당한 집단 등 5개로 구분하였다.

다중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을 위해서 명목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종속변인이 명목척도이며 3개 이상의 값을 가질 때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을 피해를 당하지 않은 집단, 1번 피해를 당한 집단, 다중피해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적 변인, 생활양식변인, 기타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준집단을 1번 피해를 당한 집단으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1번 피해를 당하게 하는 요인과 2번이상 피해를 당하게 하는 요인이

차이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기 위함이다.

Ⅳ. 다중범죄피해의 실태

1. 다중범죄피해 실태

다중범죄피해의 실태는 가구범죄의 피해를 가구원 모두에게 적용시킴으로써 개인의 가구범죄피해와 대인범죄피해의 경험을 합산한 다중범죄피해의 분포이다. <표 1>은 사건조사표를 중심으로 구성한 다중범죄피해의 빈도분포이다.

〈표 1〉 다중범죄피해의 분포(가구피해+대인피해)

피해빈도	피해유형	빈도	퍼센트	피해횟수	퍼센트
없음		9625	90,20	0	
1회	가구 1회	396	3,71	396	31,6
	대인 1회	484	4,54	484	38,6
2회	가구 2회	25	,23	50	4,0
	가구 1회+대인 1회	42	,39	84	6,7
	대인 2회	66	,62	132	10,5
3회	가구 3회	3	,03	9	0,7
	가구 2회+대인 1회	1	,01	3	0,2
	가구 1회+대인 2회	6	,06	18	1,4
	대인 3회	15	,14	45	3,6
4회	가구 1회+대인 3회	3	,03	12	1,0
	대인 4회	3	,03	12	1,0
5회	가구 2회+대인 3회	1	,01	5	0,4
	대인 5회	1	,01	5	0,4
합계		10671	100	1,255	100

지난 1년간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9625명으로 90.2%에 해당한다. 한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880명(8.25%)인데, 이중에서 가구피해만 1회 당한 사람이 396명(3.71%), 대인피해만 1회 당한 사람이 484명(4.54%)으로 대인피해만 당한 사람이 더 많다. 2번이상의 다중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166명(1.56%)이다. 즉 전체 응답자 10671명 중에서 1.56%가 지난 1년 동안 2번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한 것이다. 다중피해의 실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번 피해를 당한 사람은 133명(1.25%)인데 이 중에서 가구피해만 2번 당한 사람은 25명(0.23%), 대인피해만 2번 당한 사람이 66명(0.62%)이며, 가구피해와 대인피해를 각각 1번씩 경험한 사람이 42명(0.39%)이다. 모두 3번의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은 25명(0.23%)인데, 대인범죄만 3회 당한 사람이 가장 많아서 15명(0.14%)이며, 다음이 가구피해 1회와 대인피해 2회를 당한 사람으로 6명(0.06%)이다. 4번 피해를 당한 사람은 6명(0.06%)인데, 가구피해 1회와 대인피해 3회를 당한 사람이 3명(0.03%)이고, 대인피해만 4회 당한 사람이 3명(0.03%)이다. 사건조사표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한 사람은 5회의 피해를 보고한 경우로서 2명(0.02%)이며, 가구피해를 2번 당하고 대인피해를 3번 당한 사람이 1명이고, 대인피해만 5번 당한 사람이 1명이다.

표의 우편에서 전체사건의 피해횟수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본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범죄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범죄피해 역시 소수의 사람들에게 사건의 발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전체피해사건 중에서 70%정도는 한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며, 나머지 30%만이 다중범죄피해자가 경험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2번이상의 다중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166명(1.56%)에 불과하다. 즉 전체 응답자 10671명 중에서 1.56%가 지난 1년동안 2번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한 것이다. 이러한 빈도와 비율은 다중피해의 연구를 위한 분석을 위해서 충분한 사례라고 보기에 아쉬움이 있다.

2. 다중범죄피해자의 특성

다중범죄피해자들이 가지는 특성을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은 집단과 1번만 피해를 당한 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다중피해자 집단은 다시 3집단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가구범죄피해만 당한 집단(가구중복집단)과 대인범죄피해만 당한 집단(대인중복집단) 그리고 가구범죄피해와 대인범죄피해 모두 당한 집단(가구대인중복집단)이다⁴⁾. <표 2>는 다중피해집단 유형별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피해집단 유형과 명목척도로 구성된 배경변인간의 교차분석결과이다.

<표 2> 다중피해집단과 배경변인의 교차분석결과 (빈도(%))

	하위범주	피해없음	피해 1회	가구중복	대인 중복	가구 대인중복	합계	카이제곱
주거유형	단독주택	3877(40.3)	392(44.5)	23(82.1)	26(30.6)	30(56.6)	4348	38.9(8)***
	연립주택	1249(13.0)	110(12.5)	4(14.3)	11(12.9)	4(7.5)	1378	
	아파트 등	4499(46.7)	378(43.0)	1(3.6)	48(56.5)	19(35.8)	4945	
	계	9625(100)	880(100)	28(100)	85(100)	53(100)	10671	
세대구성	미혼	856(8.9)	82(9.3)	1(3.6)	5(5.9)	3(5.7)	947	26.1(12)**
	부부	1833(19.0)	127(14.4)	6(21.4)	9(10.6)	3(5.7)	1978	
	부모와 자녀	4989(51.8)	479(54.4)	17(60.7)	51(60.0)	35(66.0)	5571	
	기타	1947(20.2)	192(21.8)	4(14.3)	20(23.5)	12(22.6)	2175	
	계	9625(100)	880(100)	28(100)	85(100)	53(100)	10671	
성별	남자	4592(47.7)	446(50.7)	16(57.1)	38(44.7)	20(37.7)	5112	6.4(4)
	여자	5033(52.3)	434(49.3)	12(42.9)	47(55.3)	33(62.3)	5559	
	계	9625(100)	880(100)	28(100)	85(100)	53(100)	10671	
혼인여부	배우자 없음	3574(37.1)	360(40.9)	9(32.1)	42(49.4)	20(37.7)	4005	10.4(4)*
	배우자 있음	6051(62.9)	520(59.1)	19(67.9)	43(50.6)	33(62.3)	6666	
	계	9625(100)	880(100)	28(100)	85(100)	53(100)	10671	
직업	전문, 사무직	1883(19.6)	178(20.2)	4(14.3)	16(18.8)	8(15.1)	2089	62.4(20)***
	서비스직	1448(15.0)	158(18.0)	7(25.0)	17(20.0)	12(22.6)	1642	
	기능직	2023(21.0)	171(19.4)	8(28.6)	9(10.6)	8(15.1)	2219	

4) 다중범죄피해자의 특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중피해를 보고한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후의 분석결과는 가구피해중복 집단은 28명, 대인피해중복집단은 85명, 가구와대인중복의 경우는 53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위범주	피해없음	피해 1회	가구중복	대인 중복	가구 대인중복	합계	카이제곱
	전업주부	1747(18.2)	146(16.6)	4(14.3)	11(12.9)	9(17.0)	1917	
	학생	1332(13.8)	162(18.4)	3(10.7)	24(28.2)	7(13.2)	1528	
	무직	1192(12.4)	65(7.4)	2(7.1)	8(9.4)	9(17.0)	1276	
	계	9625(100)	880(100)	28(100)	85(100)	53(100)	10671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	버스	3666(38.1)	290(33.0)	11(39.3)	32(37.6)	12(22.6)	4011	24.7(12) *
	지하철	992(10.3)	97(11.0)	1(3.6)	5(5.9)	9(17.0)	1104	
	자가용	3444(35.8)	327(37.2)	9(32.1)	28(32.9)	22(41.5)	3830	
	기타	1523(15.8)	166(18.9)	7(25.0)	20(23.5)	10(18.9)	1726	
	계	9625(100)	880(100)	28(100)	85(100)	53(100)	10671	

* $p<.05$, ** $p<.01$, *** $p<.001$

먼저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주거유형과 다중피해집단간에는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피해없는 집단의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40.3%)이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비율(46.7%)보다 약간 높으며, 피해1회집단에서는 단독주택의 비율과 아파트의 비율은 44.5%와 43%로 거의 비슷하다. 그렇지만 다중피해집단의 경우 주거형태는 현저하게 차이를 드러낸다. 가구중복집단은 단독주택의 비율이 82.1%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대인중복집단의 경우에는 아파트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56.5%로 피해없음이나 피해1회집단보다 10%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대인중복집단의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56.5%)이 높다. 이러한 특성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가구범죄의 피해를 반복해서 당하는데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세대구성형태와 다중피해형태의 관계는 $p<.01$ 에서 유의미하다. 다중피해를 경험한 세 집단 모두 피해없음과 피해1회집단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세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가구대인중복집단의 경우 이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가구중복집단의 경우에는 부부로 구성된 세대의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은 범죄피해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중복집단에서 남자의 비율이, 대인중복집단과 가구대인중복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혼인여부는 $p<.05$ 에서 다중피해집단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대인중복집단에

서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았고, 가구중복집단에서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음 표에서 살펴볼 집단별 응답자의 연령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은 다중범죄피해집단과 매우 강한 관계를 보인다. 가구중복집단에서는 서비스직과 기능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중복집단에서는 학생의 비율이, 가구대인중복집단에서는 무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 사무직의 비율은 피해가 없거나 피해1회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p<.05$ 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가구대인중복집단에서 지하철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중복집단과 대인중복집단에서는 기타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3〉 다중범죄피해집단별 배경변인 평균차이 분포

	피해없음	피해 1회	가구중복	대인 중복	가구 대인중복	합계	F
사례수	9625	880	28	85	53	10671	
만나이	44.74 (17.90)	40.92 (16.93)	43.25 (14.82)	34.26 (14.91)	38.72 (13.45)	44.31 (17.82)	17.57 (0.00)
거주연수	15.05 (17.12)	13.31 (15.49)	17.35 (17.78)	7.46 (6.72)	13.58 (15.08)	14.84 (16.94)	6.09 (0.00)
이사횟수	0.52 (0.80)	0.59 (0.89)	0.25 (0.44)	0.78 (0.96)	0.87 (1.06)	0.53 (0.81)	6.29 (0.00)
최종학력	3.12 (1.21)	3.17 (1.13)	2.89 (1.13)	3.08 (0.90)	3.21 (0.95)	3.13 (1.20)	0.69 (0.598)
본인소득	3.10 (1.39)	3.19 (1.36)	3.11 (1.17)	2.89 (1.39)	3.08 (1.30)	3.10 (1.39)	1.44 (0.218)
가구 전체소득	3.96 (1.33)	4.06 (1.26)	3.75 (0.93)	3.98 (1.34)	3.89 (1.38)	3.97 (1.33)	1.42 (0.223)

* 셀의 숫자는 평균이며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유의도 검증은 F검증이며, 괄호안에 유의확률임.

<표 3>은 다중범죄피해집단별 배경변인의 평균차이를 보여준다. 만나리와 거주연수, 이사횟수는 집단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지만, 최종학력이나 본인소득, 가구전체소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최종학력이나 본인 및 가구의 소득과 같은 변인은 다중피해와 관련이 없다. 먼저 만나리를 살펴보면 피해없는 집단

이 평균연령이 가장 높다. 대인중복집단이 평균연령이 가장 낮아서 34세가량이며 다음이 가구대인중복으로 38세가량이다. 가구피해의 경우 평균연령이 높고, 대인피해의 경우 평균연령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거주한 기간을 살펴보면 다른 집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대인중복집단의 경우 평균 7년 정도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평균 7-10년 정도 거주기간이 짧다. 피해1회집단과 가구대인중복집단이 13년 정도로 비슷한 거주기간을 보였다. 반대로 이사횟수는 가구중복의 경우 가장 낮았으며, 가구대인중복집단이 가장 높았다. 가구중복피해집단의 특성은 평균연령이 높고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이사빈도가 현저하게 낮은 특성을 보인다.

〈표 4〉 다중범죄피해집단별 범죄두려움, 생활양식, 환경적 요인 분포

	피해없음	피해 1회	가구중복	대인 중복	가구 대인중복	합계	F
사례수	9625	880	28	85	53	10671	
범죄 두려움	8.09 (3.16)	8.74 (3.27)	9.36 (2.90)	9.27 (3.18)	9.34 (3.14)	8.17 (3.17)	13.85 (0.00)
범죄피해 가능성 인지	6.09 (1.72)	6.61 (1.68)	7.36 (1.28)	6.89 (1.78)	7.17 (1.79)	6.15 (1.72)	31.21 (0.00)
범죄 심각성인지	7.79 (1.54)	8.11 (1.41)	8.64 (1.06)	8.34 (1.19)	8.28 (1.46)	7.82 (1.53)	14.57 (0.00)
범죄피해 예방행동	8.47 (1.83)	8.75 (1.77)	8.75 (2.01)	9.01 (1.50)	8.85 (1.41)	8.50 (1.83)	6.96 (0.00)
범죄유형별 두려움	22.32 (7.41)	24.90 (7.25)	27.46 (8.16)	26.00 (7.35)	26.28 (6.51)	22.60 (7.44)	35.53 (0.00)
동네의 이웃관계	19.00 (4.50)	18.99 (4.30)	19.54 (3.45)	18.19 (4.24)	18.08 (4.84)	18.99 (4.48)	1.34 (0.251)
늦은 귀가 (역방향)	4.78 (2.48)	4.40 (2.47)	4.46 (2.12)	4.05 (2.39)	4.06 (2.27)	4.74 (2.48)	7.62 (0.00)
집이 비어 있는 시간	3.24 (1.53)	3.43 (1.49)	3.93 (1.41)	3.71 (1.55)	3.43 (1.42)	3.26 (1.53)	6.28 (0.00)
물리적 취약성	7.68 (2.49)	8.20 (2.53)	8.29 (3.13)	8.72 (2.60)	8.91 (2.40)	7.74 (2.50)	15.41 (0.00)
사회적 취약성	7.58 (2.39)	8.13 (2.45)	9.04 (2.56)	8.95 (2.28)	9.02 (2.52)	7.64 (2.41)	24.19 (0.00)
범죄에 대한 주민반응	13.01 (2.92)	13.13 (2.93)	13.36 (2.64)	13.58(2.53)	12.79 (3.25)	13.02 (2.92)	1.28 (0.276)

	피해없음	피해 1회	가구중복	대인 중복	가구 대인중복	합계	F
동네 이웃과의 친밀도	11.76 (4.58)	11.68 (4.61)	13.04 (4.18)	10.71(4.1 4)	11.51 (5.20)	11.75 (4.58)	1.74 (0.138)
경찰활동인식	12.64 (2.74)	11.92 (2.74)	12.00 (2.58)	11.59 (2.75)	11.00 (2.45)	12.56 (2.75)	21.09 (0.00)

* 셀의 숫자는 평균이며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유의도 검증은 F검증이며, 괄호안이 유의확률임.

<표 4>에는 범죄의 두려움, 개인의 생활양식과 환경적 요인의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네의 이웃관계, 범죄에 대한 주민의 반응, 동네 이웃과의 친밀도 등 세변인을 제외하고 모든 변인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범죄두려움에 있어서 다중피해집단은 피해없는 집단에 비해서 훨씬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가구중복집단과 가구대인중복집단이 가장 높은 두려움의 정도를 보였다.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지도 일반적인 범죄두려움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는데, 가구중복피해를 당한 집단이 범죄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에서도 다중피해집단이 우리나라의 범죄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가구중복집단이 우리나라의 범죄가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범죄예방행동도 다중피해집단이 피해없는 집단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독특한 점은 대인중복집단이다. 앞서 살펴본 두려움의 인지에 있어서는 다른 다중피해집단보다 낮았지만 범죄예방행동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인지와 행동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별범죄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 역시 다중피해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훨씬 더 높은 두려움의 정도를 보였다.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은 상식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분석의 결과 역시 여러 번 피해를 당한 다중피해집단이 범죄의 두려움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를 당할 기회를 의미하는 생활양식변인인 늦은 귀가빈도와 집을 비워두는 시간도 생활양식이론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다중피해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늦은 귀가⁵⁾가 많았고, 집을 비워두는 시간도 더 길었다. 늦은 귀가빈

5) 설문지에서 응답지의 방향이 반대로 이루어져서, 점수가 낮을수록 늦은 귀가빈도가 많은 것이고,

도에서는 대인중복집단과 가구대인중복집단이 가장 높았고, 집이 비어있는 시간에서는 가구중복집단과 대인중복집단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늦게 귀가하는 시간이 많아 더 많이 노출될수록 대인피해를 많이 당하고, 집을 비워두는 시간이 많을수록 가구피해를 많이 당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리적 및 사회적 취약성의 측면에서도 다중피해집단은 피해없는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약간의 점수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다중피해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의 물리적 환경이 낙후되어 있으며, 사회적 관계적 측면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 역시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다중피해집단은 피해없는 집단에 비해서 대체로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와 성실도에 대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5〉 다중범죄피해집단별 기초질서위반행위 분포

	피해없음	피해 1회	가구중복	대인 중복	가구 대인중복	합계	F
사례수	9625	880	28	85	53	10671	
쓰레기 분리수거 하지 않고 그냥 버림	1.39 (0.83)	1.48 (0.90)	1.29 (0.53)	1.93 (1.15)	1.30 (0.54)	1.40 (0.83)	11.01 (0.00)
무단횡단이나 새치기 등 기초 질서 위반	1.64 (0.86)	1.82 (0.94)	1.96 (0.96)	2.16 (1.08)	2.08 (1.07)	1.66 (0.87)	19.17 (0.00)
가족 중 누군가와 말다툼이나 몸싸움	1.40 (0.70)	1.56 (0.82)	1.29 (0.60)	1.91 (1.12)	2.04 (1.09)	1.42 (0.72)	30.64 (0.00)
가족 이외 누군가와 말다툼이나 몸싸움	1.23 (0.50)	1.31 (0.60)	1.25 (0.65)	1.47 (0.75)	1.62 (0.90)	1.24 (0.52)	15.51 (0.00)

* 셀의 숫자는 평균이며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유의도 검증은 F검증이며, 괄호안이 유의확률임.

이상에서 교차분석과 평균차이분석결과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중심으로 각 다중피해집단이 지니는 특징적 면을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가구중복집단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높고, 기능직과 서비스직의 비율이 높고, 평균연령은 피해를

점수가 높을수록 일찍 귀가한 것을 의미한다.

당하지 않은 집단과 비슷하며, 한 곳에 오래 거주하며, 이사를 덜한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이며, 집이 비어있는 시간도 가장 길다. 사회적 취약성도 가장 높아서 동네사람들에 의한 부정적 모습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대인중복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학생의 비율이 높고, 평균나이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가장 낮고, 한 곳에 거주하는 기간도 가장 짧고 이사 횟수도 많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기는 하지만 다른 다중피해집단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며, 밤늦게 귀가하는 빈도가 가장 많으며, 사는 동네의 물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편이다.

가구대인중복집단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서비스직과 무직의 비율이 높으며, 평균나이는 낮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젊다. 한 곳에 거주하는 기간은 중간정도이지만 이사빈도는 가장 많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고, 거주하는 지역의 물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이 상당히 높으며, 경찰의 활동에 대한 신뢰감이 가장 낮다.

V. 다중범죄피해의 요인

다중피해집단을 다른 두 집단(피해없는 집단과 피해1회집단)과 구분해 주는 독립변인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명목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모델의 적합도 검증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6〉 적합도 검증 결과

	카이 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피어슨	20420.031	21284	1.000
편차	7502.587	21284	1.000

<표 6>의 결과는 모형이 자료를 적절하게 적합하다는 영가설을 테스트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피어슨 값과 편차통계치는 카이제곱 분포를 가진다. 통계적 유의도가

0.1보다 높기 때문에 자료가 모델의 가정과 일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의 카이제곱은 절편만 있는 모델과 최종모형의 -2로그우도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으로, 이 값이 249.7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서 최종모형이 우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표 7〉 모형의 적합도 검증

모형	모델 맞춤 기준	우도비 검증		
	-2 로그 우도	카이 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만	7755,839			
최종모형	7506,746	249,093	34	,000

〈표 8〉 피해1회집단을 기준으로 한 명목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피해없는집단					다중피해집단				
	B	표준 오차	Wald	자유도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Wald	자유도	유의 확률
절편	3,85	,38	102,67	1	,000	-,16	,91	,03	1	,859
만나이	,01	,00	4,94	1	,026	-,03	,01	9,44	1	,002
물리적 취약성	-,03	,02	3,00	1	,083	-,03	,04	,42	1	,515
사회적 취약성	-,05	,02	6,59	1	,010	,11	,05	6,29	1	,012
학력	-,01	,03	,07	1	,794	-,12	,10	1,68	1	,195
가구수입	-,02	,03	,52	1	,472	-,14	,08	3,20	1	,074
늦은 귀가(역방향)	,01	,02	,32	1	,570	-,03	,04	,41	1	,524
집이 비어있는 시간	-,05	,02	4,34	1	,037	,08	,06	2,03	1	,154
기초질서위반행동	-,06	,02	15,08	1	,000	,10	,03	8,60	1	,003
주거유형: 단독주택	-,31	,08	13,51	1	,000	,15	,19	,62	1	,431
주거유형: 연립주택	,01	,12	,01	1	,938	-,09	,29	,09	1	,760
주거유형: 아파트등	,00	.	.	0	.	,00	.	.	0	.
성별: 남자	-,13	,08	2,40	1	,122	-,34	,19	3,09	1	,079
성별: 여자	,00	.	.	0	.	,00	.	.	0	.

독립변인	피해없는집단					다중피해집단				
	B	표준 오차	Wald	자유도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Wald	자유도	유의 확률
혼인여부: 무배우자	-.01	.10	.01	1	.908	-.48	.24	3.86	1	.050
혼인여부: 유배우자	.00	.	.	0	.	.00	.	.	0	.
직업: 전문사무직	-.29	.17	3.00	1	.083	-.89	.37	5.81	1	.016
직업: 서비스직	-.48	.17	8.29	1	.004	-.63	.35	3.36	1	.067
직업: 기능직	-.25	.16	2.51	1	.113	-.93	.36	6.81	1	.009
직업: 전업주부	-.45	.17	6.74	1	.009	-.96	.39	6.07	1	.014
직업: 학생	-.30	.19	2.44	1	.118	-1.17	.40	8.58	1	.003
직업: 무직	.00	.	.	0	.	.00	.	.	0	.

<표 8>은 종속변인의 세 범주, 즉 피해없는 집단, 피해1회집단, 다중피해집단으로 분류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명목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기준이 되는 집단은 1회피해를 당한 집단으로서 <표 10>의 좌측에 제시된 것은 피해1회집단과 피해없는 집단의 비교결과이며, 우측에 제시된 것은 피해1회집단과 다중피해집단의 비교결과이다. 독립변인으로 사용한 것은 배경변인들과 생활양식변인, 취약성 변인, 기초질서위반행동이다.

피해없는 집단과의 비교에서 B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만나이, 사회적 취약성, 집이 비어있는 시간, 기초질서위반행동, 주거유형중 단독주택, 직업 중에서 서비스직과 전업주부이다. 이 중에서 기초질서위반행동과 주거유형: 단독주택은 $p<.001$ 에서, 사회적 취약성과 직업: 서비스직과 전업주부는 $p<.01$ 에서 만나이와 집이 비어있는 시간은 $p<.05$ 에서 유의미하다. 나이가 많으며, 사회적 취약성이 낮으며, 집이 비어있는 시간이 적으며, 기초질서위반행동을 덜할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으며, 서비스직과 전업주부의 비율이 낮은 경우에 피해없는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다중피해집단과의 비교에서 B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만나이, 사회적 취약성, 기초질서위반행동, 혼인여부: 배우자없음, 직업에서 전문사무직, 기능직, 전업주부, 학생의 항목이다. 만나이, 기초질서위반행동, 직업: 기능직과 학생은 $p<.01$

에서, 사회적 취약성, 혼인여부: 배우자없음, 직업: 전문사무직과 전업주부는 $p < .05$ 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만나이가 적을수록, 사회적 취약성이 높을수록, 기초질서위반행동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없으며, 전문사무직, 기능직, 전업주부, 학생의 비율이 낮을 때 다중피해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두 분석을 비교하면 피해없는 집단과의 비교에서는 집이 비어있는 시간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다중피해집단과의 비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집이 비어 있는 시간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첫 번째 피해를 당하는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첫 번째 피해이후 다중피해를 설명하는데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혼인상태는 피해없는 집단과의 비교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다중피해집단과의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중피해집단에서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피해가 없는 집단과 첫 번째 범죄피해를 당한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첫 번째 피해를 당한 집단과 2번이상 피해를 당한 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즉 첫 번째 피해를 당하도록 하는 요인들이 다중피해를 당하도록 하는데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VI. 맺는 말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몇 가지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다중범죄피해 분포의 추정결과 범죄피해가 소수의 피해자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범죄피해건수의 70%정도는 1회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의 피해자들이 피해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미국의 조사결과,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추가적인 피해조사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실태가 보편적인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 이유를 찾아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중범죄피해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 특징적인 점들을 구분하는 작업도 진행하였다.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다중피해집단 유형별로 배경적 특성,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만 본 피해조사자료에서 다중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숫자가 그리 많은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중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과 1번만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고, 처음 범죄를 당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과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참신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대부분 범죄피해를 처음 경험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유사하게 반복해서 범죄피해를 당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asley와 Rosenbaum(1988)이 일상적 활동관점에서 반복피해를 분석하였을 때, 반복피해에의 과정이 단독피해의 과정과 유사하였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Osborn과 동료들(1996)은 반복피해자가 단일피해자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증거는 약하지만, 첫 번째 피해가 미래 피해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결론은 다중피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암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다중피해의 연구에 있어서 다중피해자와 단일피해자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기에 이러한 차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피해가 이후의 피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범죄피해조사에서도 종단적인 자료의 축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은경 · 최수형 · 박정선,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arr, R., and Pease, K. (1990) "Crime placement, displacement and deflection," in Tonry, M., and Morris, N. (ed)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vol 1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277-315
- Ellingworth, D., Farrell, G., & Pease, K. (1995) "A victim is a victim is a victim? Chronic victimization in four sweeps of the British Crime Surve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5 : 360-365.
- Farrell, G. (1992) "Multiple victimization: Its extent and significance," *International Review of Criminology* 2 : 85-102
- Farrell, G., Phillips, C., & Pease, K. (1995) "Like taking candy: Why does repeat victimization occur?"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5: 384-399.
- Finkelhor, D., R.K. Ormrod, H. A. Turner and S. L. Hambyb, (2005) "Measuring poly-victimization using the 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 *Child Abuse & Neglect* 29 : 1297-1312
- Gottfredson, M. (1984) *Victims of Crime: The Dimensions of Risk*, Home Office Research Study 81,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London.
- Hindelang, M., Gottfredson, M., and Garofalo, J.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An Empirical Foundation for a Theory of Personal Victimization*, Ballinger, Cambridge, MA.
- Jensen, G., and Brownfield, D. (1986). "Gender, lifestyles, and victimization: Beyond routine activity theory," *Violence Victims* 1 : 85-99
- Lasley, J. R., & Rosenbaum, J. L. (1988) "Routine activities and multiple personal victimization,"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73: 47-50
- Lauritsen, J. L. and K. F. D. Quinet, (1995) "Repeat victimization among

-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1(2) : 143-166
- Lila, M., Juan Herrero, and Enrique Gracia, (2008) “Multiple victimization of Spanish adolescents: A multilevel analysis,” *Adolescence* 43 : 333-350
- Menard, S., & Huizinga, D., (2001) “Repeat victimization in a high-risk neighborhood sample of adolescents,” *Youth & Society* 32: 447-72
- Nelson, J.F., (1984) “Multiple victimization in American cities: A statistical analysis of rare even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 870-891
- Osborn, D.R., Ellingworth, D., Hope, T., & Trickett, A. (1996) “Are repeatedly victimized households different?”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2: 223-245
- Pease, K., & Laycock, G. (1997) *Revictimization: Reducing the heat on hot victims*. Rockville, MD: National Criminal Justice Reference Serv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Reiss, A. (1980) “Victim proneness in repeat victimization by type of crime,” in Fienberg, S., and Reiss, A. (eds.), *Indicators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Quantitative Studies*, U.S.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 pp. 41-53
- Richmond, J.M., Pierce, T.W., Aspelmeier, J.E. and Alexander, A.A., (2009) “Polyvictimization, childhood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college women,” *Child Maltreatment* 14(2) : 127-147
- Saunders, B.E., (2003) “Understanding children exposed to violence: Toward an integration of overlapping field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4): 356-376.
- Sparks, R. (1981) “Multiple victimization: Evidence, theory, and future research,”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2 : 762-778
- Tseloni, A. and K. Pease, (2004) “Repeat personal victimization : Random effects, event dependence and unexplained heterogeneit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4(6)

Turner, H.A., Finkelhor, D. and Ormrod, R., (2010) "Poly-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children and youth,"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8(3): 323-330

Van Kesteren, J., Mayhew, P. and Nieuwbeerta, P., (2000) Criminal Victimization in Seventeen Industrialized Countries. NSCR/WODC. Leiden, Den Haag.

Winkel, F.W., E.Blaauw, L. Sheridan and A.C. Baldry, (2003) "Repeat criminal victimization and vulnerability for coping failure: A prospective examination of a potential risk factor," Psychology, Crime and Law 9 : 87-95

A study on multiple criminal victimization

No, Seong-Ho

The paper aims to figure out the level of multiple criminal victimization, personal or social characteristics of multiple criminal victimization groups, and causal factors of multiple victimization, analysing the data of Korean Crime Victim Survey in 2008. Multiple victimization defined as a situation that the individual is the victim of two or more crimes regardless the crime type within a given year.

166 people, 1.6% of the sample, experienced multiple victimization within last year, and they experienced about 30% of all the crimes which people in the sample had. Each of multiple victimization groups(multiple household victim, multiple personal victim, multiple household and personal victim) shows some differences in personal or social characteristics. To find out the factors to cause multiple victimization, nominal regression analysis method were used. As a result, factors which affected the process people became single victim had similar effects to the process which single victim became multiple victim.

❖ Key words : multiple victimization, cause of criminal victimization, victimization survey